

#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규정

- 제정 : 2001. 12. 17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2. 6. 29.
- 개정 : 2015. 5. 13.
- 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8. 3. 1.
- 개정 : 2019. 3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의 목적은 수원과학대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·보호 및 가해자 조사, 징계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성적 평등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성폭력 행위”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행위
2. 교육현장 및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폭력 행위
3.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 및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
4. 기타 상대방의 자긍심을 손상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성폭력 행위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에 소속하는 교원·직원 및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해혐의자 중 1인만이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②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, 초빙교원, 겸임교원, 외국인교원, 강의전담전임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명예교수, 시간강사를 포함하고,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원 및 조교, 일용직을 포함하며, 학생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(외국인학생 및 교환학생 포함)중이거나 평생교육원 수강생 및 휴학중인 자 등을 포함한다.

**제4조(피해자 보호)** ① 성폭력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징계절차 등에 관여한 자는 피해주장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, 용모, 사진 및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성폭력 행위와 관련된 피해주장자 및 피해자는 교육 및 학교생활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#### 4-2-17 성폭력예방 및 피해구제 규정

③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혐의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

④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 치료지원, 가해혐의자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

**제5조(가해혐의자 보호)** ① 가해혐의자는 징계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.

② 진상조사후 처분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주장자 및 학교 구성원은 누구라도 당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인신공격 및 게시행위를 할 수 없다.

**제6조(학교의 의무)** 학교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육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성폭력 행위의 예방

**제7조(담당부서)**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행위를 예방 및 교육하고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사는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, 성폭력 관련 업무는 인권센터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.)에서 담당한다.

**제8조(담당업무)** 담당부서의 성폭력에 관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일
2.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일
3. 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고수리 및 보고하는 일
4.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 담당과 운영 및 알선하는 일
5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일

**제9조(상담원)** 본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으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## 제 3 장 조사 및 징계

**제10조(신고)**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자가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7조의 담당부서에 그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성폭력 담당부서의 장은 피해자와의 상담결과를 피해자의 진술을 첨부하여 신속히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조사요청 기한)** 성폭력을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는 성폭력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조사)** ① 총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에 성폭력 행위 여부의 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.

② 피해주장자가 조사 및 구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총장은 보고 받은 즉시 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.

③ 피해주장자가 상담을 원할 뿐 조사 및 구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되 조사는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성폭력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7일 이내에 총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피해조사 및 징계처분)** ① 총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성폭력 행위가 명백할 경우에는 학생생활·복지위원회 또는 교직원 징계위원회(이하 “징계위원회”라 한다.)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총장의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 및 학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하되 피해주장자 또는 가해혐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한하여 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각 1인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4조(무혐의 처리)**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혐의자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주장자에게 주의·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가해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무혐의 결정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.

**제15조(징계 이외의 처분)**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총장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을 부가하여 명할 수 있다.

1. 징계결과를 학보 또는 교내 게시판에 일정기간 공고할 것을 명하는 일
2. 징계자로 하여금 공개 사과하도록 명하는 일

**제16조(방조자 등에 대한 징계)** ① 성폭력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처벌 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가해행위 후 가해혐의자와 음모하여 피해주장자 및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자도 해당 위원회에 그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7조(허위사실의 신고 및 유포자)** 총장은 타인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성폭력에 관한 허

4-2-17 성폭력예방 및 피해구제 규정

위사실을 신고 또는 교내.외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**제18조(정상참작)** 성폭력 행위를 범한 자가 조사 착수전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보일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보 칙

**제19조(시행세칙 등)**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에 따로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, 수원과학대학교 학칙 또는 제 규정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폐지) 2001년 3월 2일(학생 대상) 및 4월 1일(교직원 대상) 제정된 “성희롱(폭력)규정”은 이 규정 시행으로 폐지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